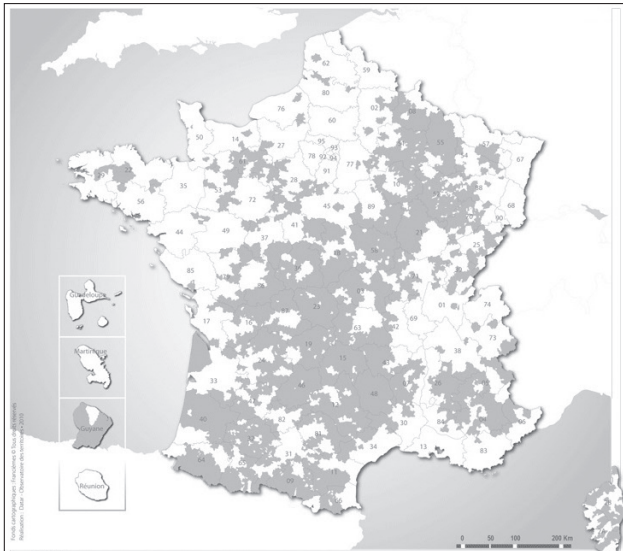




국토개발청, 새로운 농촌 활성화 지역 선정 기준 제시

농촌활성화 지역(Zone de Revitalisation Rurale: ZRR)이란 인구밀도가 낮고 사회-경제적 개발에 있어 구조적으로 불리한 조건을 지닌 농촌지역에 적용된 정책으로 1995년 2월 4일 LOADT법(Loi Orientation pour l'Aménagement et l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에 의해 처음으로 그 개념이 설정되었다. 국토개발장관회의(Comité Interministériel de l'aménagement et du Développement du Territoire)에서는 2003년부터

〈그림 1〉 농촌활성화 지역 분포도



자료: 국토개발청 홈페이지

이 제도를 현 수요에 적용하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왔는데, 이에 따라 점차적으로 재정보조 제도를 늘려갔고, 농촌활성화 지역 내에 있는 코뮌끼리 상호협력체를 구성하도록 유도해 왔다. 이와 같은 변화는 지속적으로 농촌개발법(la loi relative au développement des territoires ruraux)에 반영되었다. 농촌활성화 지역 선정코뮌은 매년 국무총리령에 의해 재설정된다.

이 제도의 목적은 재정적, 사회적 방법을 통해 농촌지역의 개발을 돕는 것으로 농촌활성화 지역 내에 입지하는 기업은 세제 할인 및 공제 혜택을 받게 되며, 이는 지역 내 상인 및 수공업주, 부동산 및 관광 부문의 투자자, 각종 협회(Association)에까지 적용된다. 2010년 12월 국토개발청 DATAR에 의하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농촌활성화 지역의 기준

이 된다. 인구의 기준으로 보면 인구밀도 31명/km² 이하의 캉통(Canton: 데파르트망 하부 행정단위) 또는 인구밀도 33명/km² 이하의 아롱디스망(Arrondissement: 데파르트망 하부 행정단위로 주요 도시에만 적용), 또는 인구밀도 31명/km² 이하의 지역 중 코뮌연합체(Etablissement Public de Coopération Intercommunale: EPCI)에 속해 있는 지역이 해당된다. 사회경제적 기준은 인구감소지역, 또는 농업활동인구비율이 국가 평균의 두 배 이상인 지역, 즉 8.3% 이상인 지역이며, 인구밀도가 5명/km² 이하인 지역은 농업활동인구비율에 관계 없이 포함된다. 제도적 기준은 코뮌

간 상호협력체(Intercommunalité)를 형성하기 위하여 협력하는 코뮌, 또는 현재 존재하는 코뮌 간 상호협력기관에 속하는 곳이다.

2010년 12월 30일 현재 1만 3,082개의 코뮌이 농촌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지도에 나타난 바와 같은데, 전체적으로 국토의 중앙부분 및 산간지대, 구산업지대가 해당된다. 농촌활성화 지역 내 기업에 대해서 다음의 혜택이 주어진다. 우선, 기업대표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전액 혹은 부분적으로 공제해 주며 이는 경우에 따라 최대 14년 동안 수혜할 수 있다. 해당 자치단체의 허가에 따라 기업건물 부지에 대한 부동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장인 또는 상인의 경우 인구 2천 명 이하의 코뮌에서 기존에 폐쇄한 사업장을 다시 시작하거나 신규 개업할 경우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상업부문 이외의 직업(의사, 건강관련 직종, 자유직업)의 경우 신규 개업 시 세금공제 혜택을 받는다. 해당지역 내 부동산 소유자의 경우 신규로 주택을 구입하여 임대사업을 위해 국립주택사무소(Agence Nationale de l'Habitat: ANAH)의 지원을 받고 수리한 경우 부동산세를 공제받을 수 있으며,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도 할인받는다. 관광부문의 투자자도 관광지구 내에 위치한 주택을 임대할 경우 소득세를 할인받을 수 있다. 주택 개선을 위한 공사, 재건축, 확장의 경우도 지원의 대상이 된다. 농촌 및 관광지구에 협회 및 동호회를 설립할 경우 협회 대표에 최소임금(Salaire Minimum de Croissance: SMIC)의 1.5 배에 해당하는 사회보장비를 지원받는다.

[자료: 국토개발청 홈페이지(<http://www.datar.gouv.fr>)]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지자체 공통 지표 선정

국토개발청 DATAR는 지자체, 지역의 경제주체, 국가가 개발을 하는 데 있어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40개의 지속가능한 개발 지표(Indicateurs de Développement Durable Territoriaux: IDDT)를 선정하여 국토개발청 자료 홈페이지에 게시하였다. 지표 개발의 아이디어는 2009~2012 국가 개발전략 수립에서 국토의 불균형을 줄이고 지역 거버넌스를 강화하기 위해 나왔는데, 각 지자체가 개별 발전계획 수립 시 지속가능한 개발을 장려하기 위해 공통의 틀을 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공통된 지표를 통해 각 지자체는 유럽 연합,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전략을 해당단위 개발계획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국가 또한 이 지표를 통해 국토의 다양성을 파악하고 지역 사정에 맞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지자체의 개발쟁점은 지역주체들의 의사결정에 달려 있으며, 여기에서 지역 스스로의 잠재력과 강약점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지자체 연합회는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주도적으로 지역요건에 맞는 차별화된 지표를 이미 개발한 바 있다. 이것이 Agenda 21이라는 프로젝트인데, 2009년 약 500개가 수립되었고 이 중 100여 개가 지속가능한 개발부(MEEDDM)에 의해 인정을 받았다. 이밖에 미디 피레네(Midi-Myrénées) 지역은 개별적으로 통계 및 경제연구소(INSEE)의 레지옹분과와 통계서비

〈표 1〉 지속가능한 개발지표

분야	기본방향	지표
1. 지식사회와 경제 사회개발	인적자본개발 및 고용잠재력 제고	• 청년인력의 교육수준(24~35세) • 고용률
	지속적 성장을 위한 경쟁력 제고	• 개발잠재력(1인당 국내총생산, 1인당 평균국민총생산과의 편차) • 연구에 대한 노력
	경제구조변화에 적응 및 세계화에 대응	• 국제화 정도(다국적기업 노동자의 비율) • 기업의 신규창업과 생존(기업창업률, 기업생존률)
2. 소비와 생산	올바른 생산과정 준수 및 책임감 있는 소비행태	• 수도 사용량(농업용수, 산업용수, 가계용수) • 목재 연료생산량(인구 1인당 목재연료 생산량, 목재연료 생산량의 변화) • 유기농 면적(전체농업용지 중 유기농 면적, 유기농 면적의 변화)
	쓰레기 줄이기 및 재활용	• 가계 쓰레기 배출량(인구 1인당 쓰레기 배출량, 인구 1인당 쓰레기 배출량의 변화) • 쓰레기 재활용률
3. 기후변화와 에너지 사용	에너지 소비인자 및 재생에너지 개발	• 에너지 소비량(레지옹 내 총생산 대비 에너지 소비량, 레지옹 내 총생산 대비 에너지 소비량의 변화) • 재생에너지(재생에너지 생산 및 전체전기소비량 대비 차지하는 비율)
	온실가스 감소 및 기후변화의 영향 예측	• 이산화탄소 배출량 • 계절별 온도 지수
4. 교통 및 이동성	지속가능한 화물운송	• 철도, 수운을 활용한 화물운송비율
	이동행태의 개선	• 통근 이동수단의 변화(자동차 이용의 변화, 대중교통 이용의 변화, 자동차 이용률, 대중교통 이용률)
	교통수단의 부정적 영향 관리 및 제한	• 도로 교통사고 수의 변화 • 도로 소음에 노출된 인구밀집도 • 교통수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5. 천연자원의 보존과 관리	생물종다양성 보호	• Natura 2000에 등록된 면적비율 • 자연지대 분화 • 서식하는 어류의 수 • 서식하는 조류의 수
	물-공기-토양의 양호한 상태 점검	• 인공공간(인공공간의 변화, 인공공간 비율) • 하천수질(질산염과 농약 집적도) • 하수도망에 연결되지 않은 주택 수
6. 공중보건, 예방 및 위기관리	주요 위기 예방 및 관리	• Atmo 대기오염지수 • 오염유발 산업시설 집적도 • 홍수피해 예상 지대 거주민수
	보건 및 건강 관리	• 유아사망률(남아, 여아) • 평균수명(남성, 여성)
7. 국토 및 사회적 연대	사회적 평등과 혼성 장려 세대 간 연대강화 모두에게 열린 생활거점 창설	• 빈곤률 • 장기 실업률 • 실업률 • 평균 거주면적 초과인구 • 졸업장 미취득률 • 국회의원선거 1차선거 참여율
8. 거버넌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전략 및 안내 장려 지자체 간 협력과 연대 강화	• 코뮌 간 상호협력(코뮌 간 협력사업 지출액 비율) • 레지옹 내 협력사업예산

자료: 국토개발청 국토개발자료 홈페이지(<http://www.territoires.gouv.fr/>)

스 기관(SOEs)과 협력하여 개발지표를 만들었다. 이와 같이 여러 주체들을 통해 지표가 새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에서는 통합적 체계를 국가에 요구하였고, 이에 지속가능한 개발부는 부서 내부

기관인 지속가능한 개발 위원회(Commissariat Général au Développement durable: CGDD)와 국토개발청에 공동으로 지표개발을 요청하였다. 여기에는 현존하는 다양한 정책 간의 상호교류와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환경분야 연구소와 레지옹 연합(Association des régions de France), 데파르트망 연합(Association des départements de France), 도시권 연합(Association des communautés urbaines: Acuf), 도시개발국 연합, 자연환경 연합(Association France nature environnement)의 의견이 반영되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지표 개발의 원리는 연계성, 질, 효율성의 세 가지 개념을 기본으로 한다. 우선, 지표는 유럽연합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개발 기준과의 연계성을 지녀야 한다. 따라서 2006년 6월부터 발표된 유럽연합의 지속가능한 개발 전략과 국가의 전략을 기본축으로 하여, 환경포럼 그르넬 앙비론망(Grenelle de l'environnement), 각 연합회 및 Agenda 21프로젝트가 참조되었다. 각 지표는 질적으로 높은 기준을 바탕으로 한다. 이는, 지역주체에게 투명하고 적용할 만하고, 안정적이며, 측정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표들은 상호보완성, 상호연계성을 지녀야 하므로 각 분야의 지표가 전 지역에 걸쳐 공통된 방법론으로 개발되어 결과적으로 국토의 다양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한다. 마지막으로 각 지표는 프리젠테이션과 분석을 담은 하나의 파일로 작성되는데, 이 파일은 지표가 선정된 이유 및 한계, 사용상 주의사항, 해석을 담는다.

2010년 12월 현재 최종적으로 선정된 지표는

<표 1>과 같으며 8개의 분야로 나뉘어 있다. 각 분야의 쟁점과 지표 간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기본 방향을 제시하였다. 각 지표는 그 분야의 현 상태를 기술하거나 그 분야의 성장현황을 나타내기 위해 선정되었으므로 재정 혹은 수단을 나타내는 지표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지표도 선정되지 않았다. 국토개발청에 의하면 이밖에 수많은 지표들이 논의되었으나 측정하기 어렵거나 통계자료의 부재로 인해 지표화할 수 없었다.

지속가능한 개발지표는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개발방식의 변화에 대한 지역 주체의 수요를 파악하여 정부가 여러 기관의 노하우를 총집합하여 만든 체제다. 각 지자체는 따라서 제안된 지표를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것이다. 국토개발청 국토개발자료 홈페이지에는 각 지표별로 코뮌단위까지 상세히 지도와 표로 게시되어 있으므로 국토 단위마다 지역의 상황을 주변지역 혹은 국가전체와 비교해 볼 수 있으며, 지역별 특수 여건에 대해서는 지역 단위의 통계 및 경제연구소(Insee), 환경, 개발 및 주택 레지옹 분과(Direction régionale de l'Environnement, de l'Aménagement et du Logement: Dreal)와 협력하여 자체적으로 상세한 연구가 가능하다.

[자료: 국토개발청 국토개발자료 홈페이지
(<http://www.territoires.gouv.fr/>)]

이수진 | 파리소르본느대학교(Université Paris-Sorbonne
(Paris IV)) 지리학과 박사과정